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굴 대응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으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다. 민관협력,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라. 정보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 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2-3396-5382, 팩스 : 02-3396-8722, email : stopt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

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

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	신고대상자 :		
	신고대상자 연락처 :		
	신고대상자 상세주소 :		
	위기상황 : ※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액	건당 00만원 ※ 동일 신고인이 연간 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